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7.9.>

검 사 성 적 서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4005589

1. 신 청 인 ☑ 원 본 ☐ 재발급
 ○ 업체명 : (주)지에프에스
 ○ 주 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56 (용현동)
 ○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400137호, 2024. 4. 22.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성능인증용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표시등
4. 검사기간 : 2024. 4. 22. ~ 2024. 5. 29.
5. 검사방법 : 소방청고시 제2023-41호(2023. 11. 30.)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7. 검사환경
 ○ 온도 : (21.8 ± 2.4) ℃, 습도 : (51 ± 1) % R.H.
8. 검사결과 : 합격
 ※ 첨부 : 세부 성능시험 결과(2 ~ 3 페이지 참조)

확 인	실 무 자	기 술 책 임 자
	성 명 : 이 숭 희 (서명)	성 명 : 정 선 미 (서명)

위 성적서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4년 5월 30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, KS Q ISO/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첨부]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4-00589

성능시험 결과

업체명	(주)지에프에스	성능인증번호	표시24-10
품 명	표시등	형 식	DC 24 V, LED식, 옥내형

시험항목	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3조	구조		구조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	10	적 합	합 격	
제4조	주위온도시험	고온	(50 ± 2) ℃에서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		저온	-(20 ± 2) ℃ 에서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5조	표시등의 재질	외함의두께	표시등의 재질의 두께는 2 ㎜이상일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		열변형시험	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은 섭씨 (70 ± 2)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자기소화성시험	UL94 규정에 의한 V-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6조	표시등의 기능		표시등의 기능은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	10	시험생략	합 격	*
제7조	수명시험		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%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, 현저한 광속변화,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7조의2	반복시험		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(9초) 및 전원차단(1초)을 500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	2	적 합	합 격	
제8조	식별도시험		표시등의 식별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
"계속"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4005891

성능시험 결과

업체명	(주)지에프에스	성능인증번호	표시24-10
품 명	표시등	형 식	DC 24 V, LED식, 옥내형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9조	방수시험	(65 ± 2) ℃의 맑은 물에 15분 동안 침지한 후 (0 ± 2) ℃ 및 0.3 %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5분간 순차적으로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 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20 MΩ이상일 것	2	해당없음	—	
제9조의2	살수시험	옥내·옥외형 표시등은 살수시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2	해당없음	—	
제10조	진동시험	통전 상태에서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10조의2	충격시험	표시등의 충격시험 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2	적 합	합 격	
제11조	절연저항시험	표시등의 규정된 부위의 절연저항은 기준에 적합 할 것	10	시험생략	합 격	*
제12조	절연내력시험	표시등의 규정된 부위가 절연내력시험에 1분간 견딜 것	10	시험생략	합 격	*
제13조	표시	표시사항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10	적 합	합 격	

※ 기 타 "*" 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제2항,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」 제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.

"끝"